

재산관리신탁 계약서

_____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주)하나은행(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재산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금전의 수급대행 등 각종 서비스업무를 제공하고 위탁자 소유의 재산을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신탁을 인수한다.

제 2 조 (신탁재산) ① 신탁재산은 별지 신탁재산목록에 기재한 위탁자의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및 토지와 그 정착물(이하 "부동산"이라 한다)로 한다.

②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과 금전의 수급대행업무를 소정의 재산관리신탁 신청서 또는 금전의 수급대행신청서에 기재한 방법에 의하여 관계법령, 기타 사정에 의하여 관리 및 운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이에 대한 관리 및 운용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 3 조 (신탁가액) ① 신탁가액은 장부에 기재하는 금액이며, 신탁보수계산의 기준이 된다.

② 유가증권의 신탁가액은 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금액, 주식의 경우에는 수탁 당시의 시가로 한다.

③ 금전채권의 신탁가액은 증서금액 또는 채권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의 신탁가액은 수탁자가 정하는 감정방법에 따라 자체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 4 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6 개월이상 월단위로 정한다.

② 신탁기간의 기산일은 신탁계약일로 한다.

③ 신탁기간의 만료일에 해지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6 개월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제 5 조 (신탁의 표시)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고 신탁등기, 등록 또는 신탁의 표시를 하며, 이를 위하여 위탁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② 제 1 항의 소유권 이전과 신탁등기, 등록 또는 신탁의 표시는 신탁재산에 따라 신탁사무의 처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 (업무의 구분) 재산관리신탁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금전의 수급대행업무

1. 수입금의 수령대행
2. 지출금의 지급대행
- ②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업무
 1. 금전신탁
 2. 유가증권신탁
 3. 금전채권신탁
 4. 부동산신탁
- ③ 기타 서비스업무
 1. 보호예수 및 대여금고
 2. 해외송금 자동대체
 3. 부동산 매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중개
 4. 기타 제공가능한 서비스 업무
- ④ 예수금 및 금전신탁은 관리 및 운용방법을 수탁자의 금전신탁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처리한다.

제 7 조 (결제계좌) ① 이 신탁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결제계좌로서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한다.

- ② 이 신탁에 관련된 모든 수입금은 결제계좌에 입금하며 지출금의 경우에는 결제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 ③ 결제계좌의 명의는 위탁자로 하고 거래인감은 신탁부장 직인을 사용한다.
- ④ 결제계좌의 보통예금통장은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수탁자가 보관한다.
- ⑤ 결제계좌 잔액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대행을 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제세공과금 및 비용) ①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제세공과금 및 제비용은 해당금액을 사전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계좌의 잔액이 부족 한 경우에는 신탁재산 또는 운용수익금 중에서 수탁자가 대리환급하여 그 지급에 총당할 수 있다.
- ③ 신탁재산 또는 운용수익금의 부족 등으로 제세공과금 및 제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9 조 (수수료 및 신탁보수) ① 기본수수료 및 신탁보수는 수탁자가 정하는 금액 또는 율에 의하며, 수탁자가 소정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② 기본수수료는 신탁신청할 때, 연장신청할 때 또는 자동연장할 때에 받는다.

③ 신탁보수는 매년 6 월과 12 월의 각 25 일에 받는다. 다만, 금전채권신탁의 경우에는 보험금 및 추심대전 수령시에 받는다.

④ 기본수수료 및 신탁보수는 결제계좌에서 대체지급 처리하거나 별도로 받는다. 다만 결제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탁재산 또는 운용수익금 중에서 받을 수 있다.

⑤ 각종 서비스업무 수수료는 업무가 발생할 때에 해당수수료를 제 4 항의 방법으로 받는다.

제 10 조 (중도해지) ① 이 신탁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해지할 수 있다.

1. 신탁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위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탁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도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가 연서한 청구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탁자는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중도해지할 수 있다.

③ 위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수수료 및 신탁보수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수익자 변경)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은 수탁자의 승낙없이 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관리 및 운용상황 통지)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정기적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한다.

제 14 조 (신탁종류) ① 이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재산관리신탁 통장 및 계약서와 상환으로 신탁재산을 관리 및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② 신탁재산의 교부일은 신탁종료일 다음 영업일로 한다.

제 15 조 (인감 또는 서명감 신고) ① 위탁자 및 수익자는 거래인감 또는 서명감을 수탁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금 청구 또는 제신고 등에 사용된 인감 또는 서명을 미리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위없다고 인정하고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또는 서명의 도용, 위조, 변조, 기타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자가 인감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 및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그 신고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신고인감을 분실하였을 때
2. 위탁자 및 수익자에 관한 개인, 서명감의 변경, 주소변경 또는 행위능력의 변동이 있을 때.

제 17 조 (책임의 소재)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 계약과 이 계약에 의거한 위탁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관할법원) 이 신탁에 관한 소송은 수탁자의 본점 또는 취급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되, 법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 19 조 (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수탁자의 관계내규에 의하여 처리한다.

위 각 조항을 엄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탁자, 수탁자가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성 명 : (인)

수익자 주 소 :
성 명 : (인)

수탁자 주 소 :

성 명 : 주식회사 하나은행 (부)장 (인)

[별지] 신탁재산목록

[별지] 신탁재산목록

신 탁 재 산 목 록

| 종 류 | 수 량 | 명 세 | 비 고 |
|-----|-----|-----|-----|
| | | | |